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주) 한국씨티은행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 3455-2504 / 3455-2567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 모두자산탁(주식)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두자산탁(주식)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 모두자산탁(주식)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두자산탁 2호(주식)
미래에셋 인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두자산탁 2호(주식)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종류 A, C1, C2, C3, C4, C5, C-2, C-e, 직판F)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신탁형,
공모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다. 보관 · 관리기간: 2011.07.01 - 2012.06.30

라. 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주)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경남은행,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부산은행, 브릿지증권, 산업은행,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제주은행,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HMC 투자증권, HSBC 은행, IBK 투자증권, LIG 투자증권, NH 투자증권,
SC 은행, SK 증권, 애플투자증권

2.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해당 사항 없음.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 사항 없음.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6. 회계감사인의 선임 · 해임에 관한 사항

선임일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원)	계약방법
2007.01.25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1년	2,530,000	서면

* 회계감사인 선임비용은 1년에 한번 회계감사 수행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임.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 및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본 집합투자기구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 사항 없음.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9 조 제 1 항 제 1 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감시의무 면제)에 해당 되어 본 항목은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투자원리금에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iraeasset.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홈페이지를 이용 할 경우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자산 결제 및 보관을 위하여 씨티은행 홍콩(Citibank N.A. Hong Kong Branch)을 해외보관 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보관 대리인은 동 업무를 각국의 보관 대리인에게 재위임 할 수 있습니다.